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

① **'장기등'의 범위에 손 · 팔 추가**

② **손 · 팔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**

- 손 · 팔 이식의 역사가 짧고 이식 건수가 적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이식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반영

③ **손 · 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정기준 마련**

- **(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)** 재활치료실, 물리치료실, 미세현미경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, 국내외 이식의료기관에서 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정형외과·성형외과(수부외과 전문) 전문의와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를 두어야 함

- **(이식대상자 선정기준)** 기증자와 **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**가 **음성**인 이식대기자 중 **양팔이 모두 없는 이식대기자**를 한쪽 팔이 없는 이식대기자에 **우선 선정**하며, 이식대기자의 피부색, 손 또는 팔의 크기, 대기기간,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**종합적으로 고려**하여 선정

2 손·팔 이식 세부운영지침 개정·시행

① **이식대기자 등록기준(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)**

- 한쪽 손·팔 또는 양쪽 손·팔이 결손 한 환자(장애진단서 제출)
- 결손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

② **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등록 적합여부 판별을 위한 필수 검사 항목**

- **(기본 검사)** 장기 기증 및 이식에 필수적인 혈액검사, 방사선검사 등
- **(손 · 팔 기증자)** 사람백혈구항원검사(HLA typing), 기증부위 손 포함한 팔 X-Ray, 실물사진 2장
- **(손 · 팔 이식대기자)** 사람백혈구항원검사(HLA typing)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, 어깨를 포함한 결손부위 X-Ray

③ **다장기 적출 시 우선순위 범위에 손·팔 추가**

④ **손·팔 이식절차 및 준수사항 등**

- 다른 고형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만 손 또는 팔 적출 진행
-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손 또는 팔을 적출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
-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이식 후 선정사유 및 이식 후 결과를 7일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
- 이식의료기관은 적출 후 보형물을 통하여 외관 복구